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72
------	------

2017. 11. 28.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3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11. 2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윤준병)

-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증원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순증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직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격무부서 인력 지원을 위한 일반직 333명, 문화시설 추진과 미세먼지 예·경보제 강화 등 연구직 12명, 강남소방서 세곡 119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2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총 정원 17,771명 → 18,144명〉

구 분	총 계	2.3급	3급	4급	5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소방정 이상	소방령 이하	교원
현 행	17,771	23	17	231	9,519	57	301	35	6,916	498
개정후	18,144	23	17	231	9,852	59	311	35	6,944	498
증 감	+373	-	-	-	+333	+2	+10	-	+28	-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전	17,771	9,872	300	6,951	498	150
개정 후	18,144	10,215	300	6,979	498	152
증 감	+ 373	+ 343	-	+ 28	-	+ 2
사 유		- 복지·안전 - 문화·경제 - 재생·교통 - 환경·공원 - 기획·조정 - 행정·재무		- 세 곡 1 1 9 안전센터 신설 (+28)		

나. 일반직 공무원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시는 최근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조직내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내부 자유게시판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과중한 업무부담과 인력증원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이후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발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족한 실무인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고충업무에 대한 인력 추가배치와 신규사업 필요인력의 확충을 위해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 345명을 증원하기로 함.
- 시는 우선적으로 본청의 고충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증원하고,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급한 고충인력에 대한 제한적 증원이후 별도의 조직진단을 거친 후 중·장기적으로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까지 시는 복지·안전, 문화·경제, 재생·교통, 환경, 기획·소통, 행정·재무 등으로 시정 업무 분야를 구분하고 이들 분야를 또 각 실·국·본부 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인력 수요에 따라 관련 인력 증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다만, 금번 조직 증원은 일선 실무인력으로부터 제기된 인력 확보 요구 등이 급작스럽게 반영되면서 현재 시점까지 증원 인력의 구체적인 부서별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음.
-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이번 증원 과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으나 부서별 혹은 업무별 증원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공무원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는 미래 행정 수요나 발전계획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장래의 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에 따르면 시는 2021년까지 변화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17,890명의 정원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증원은 5년 단위의 이 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다소 과도하고 급박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원	17,476	17,715	17,769	17,812	17,896	17,890
증감	-	+239	+54	+43	+84	△6

- 공공조직은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일반 민간의 영역보다 훨씬 낮아서 일단 채용이 완료된 경우 행정서비스 수요감소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인력운용계획부터 채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임.
- 또한, 공무원 정원의 확대 이후에라도 시 전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과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각 업무별 필요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실제 채용 등은 다소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다. 소방 공무원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시는 2018년 4월 신설 예정인 세곡 119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2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km^2$ 이상인 경우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남구 세곡지구(세곡·자곡·울현동) 개발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은 $6.36 km^2$ 의 관할면적에 올해 8월 기준으로 16,760세대 44,738명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말 지역개발 완료시점에 119안전센터 설치기준(5만명)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됨.
- 해당 지역은 기존의 수서 119안전센터가 관할하고 있었으나 세곡동 지역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증가로 안전수요 집중현상 분산 및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수서 119안전센터에서 세곡 119안전센터를 분리·신설하고자 함.
- 현재 시에는 24개 소방서와 116개 안전센터, 24개 구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의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13~'17년)에 따라 세곡 119안전센터 설치 이후 2019년에는 마곡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임.
- 세곡 119안전센터는 강남구 울현동 265에 대지면적 $1,197m^2$, 연면적 $1,200m^2$ 의 지상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중에 있으며, 2018년 4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
- 해당 안전센터는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차량 4대와 3교대 근무를

대비해 모두 28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세곡 119안전센터 장비 및 인력 운용계획〉

- 운용 소방력 : 차량 4대 / 인력 28명

구 분	합 계	센터장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륜차
배치차량(대)	4	-	1	1	1	1
기준인력(명)	-	1	4	2	3	1
소요인력(명) (기준인력*3교대)	28	1	12	6	9	-

- 신규 조성된 세곡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중 고령자 거주 단지(407세대)가 있고, 457병상 규모의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구조·구급 수요가 충분하고¹⁾, 본서 구조대와의 거리(7.8km) 및 소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9센터 설치와 해당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최근 시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런 양적 팽창이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 소방관서 간 이상적인 공급체계를 갖추는 등 소방 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2017년 8월 기준 해당 지역 노령인구는 5,32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라. 기준인건비 및 정원관리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2)에 따라 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한 정원을 운용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가 2017년 제시한 시의 기준인건비는 1조 6,025억원 이며, 이에 따라 당초 시는 2017년 예산편성을 통해 1조 5,887억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정원조정(132명) 등을 반영한 올해 총 인건비는 1조 5,985억원으로 여유 인건비는 현재 약 40억원에 불과함.
-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한 인력 168명과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373명의 인건비 소요액 약 394억원을 반영할 경우 올해의 기준인건비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12월 서울시에 통보할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우려도 제기됨.

2)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액〉

구 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무기계약직 제외)	전년대비 증가율
2014	1조 3,455억원	17,651명	-
2015	1조 4,503억원	17,801명	1,048억원(7.8%)
2016	1조 5,256억원	17,855명	753억원(5.2%)
2017	1조 6,025억원	17,853명	769억원(5.0%)

- 물론,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통보하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에는 기준인건비 총액의 3%(약 480억원)를 자율적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절대 적절한 조치로 이해될 수 없음.

-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원된 인력의 채용시기 조절과 기존 인력 규모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인건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됨.

마.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시 조직내부의 불미스러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하위직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상당기간 제기되어온 시 조직 내부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력 활용계획 등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현재 제출된 개정안의 인력소요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조직 내부의 의견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임.
- 또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조직의 정원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건비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금번 정원 조정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정원의 확대 결정 이후에라도 조직진단과 각 업무량 분석 등의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채용규모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의 인력 운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771”을 “18,144”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872”를 “10,217”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6,951”을 “6,979”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771”을 “18,144”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909”를 “10,242”로 한다.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519”를 “9,852”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58”을 “370”으로 한다.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59	5		32	22	
-----	----	---	--	----	----	--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301”을 “311”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951”을 “6,979”로 한다.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916”을 “6,94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7,771</u>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9,872</u>명</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u>6,951</u>명</p> <p>3.~5. (생략)</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18,144</u> -----</p> <p>-----.</p> <p>1. -----</p> <p>-----</p> <p><u>10,217</u> --</p> <p>2. -----</p> <p>----- <u>6,979</u> --</p> <p>3.~5.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 style="color: blue;"><u>17,771</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 style="color: blue;"><u>9,90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139</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4·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 style="color: blue;"><u>9,51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7,771</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9,909</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519</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 style="color: red;"><u>18,14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 style="color: red;"><u>10,24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139</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4·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 style="color: red;"><u>9,85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8,144</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10,242</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852</u>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7,771</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9,909</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519</u>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8,144</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10,242</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852</u>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전문경력관 소계	97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 계	29							별정직 계	29						
연구직 계	358							연구직 계	370						
연구관	57	3		32	22		연구관	59	5		32	22			
연구사	301							연구사	311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6,951							소방공무원 계	6,979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916							소방령 이하 계	6,944						
교육공무원 계	498							교육공무원 계	498						